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2차)

나. 예산액 : 246백만원(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산불방지대책)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력 제 35조 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5조 제 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 20조 제 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밖에 제 2호 또는 제 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밖에 제 2호 또는 제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입찰사유

○ 본 용역 사업은 산불 재난 예방을 위한 용역으로 재난담당자 및 대국민용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함.

□ 공고기간 : 10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작성자 : 산림재난예측분석과 임업주사보 안 희 영 (서명)

확인자 : 산림재난예측분석과 과 장 오 정 학 (서명)